

5.1.19 창의인재교육원운영규정

제정 2017. 9. 14.
개정 2018. 10. 23.
전부개정 2020. 02. 28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8조의2 초당대학교 창의인재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교육원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합관리하고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초당인재상을 구현하고 핵심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2조(조직) 교육원은 운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, 취·창업지원센터, 학생상담센터, CRC운영센터를 두며, 각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.

제3조(인적 구성 및 전문성) ① 교육원에는 원장, 직원 및 조교를 두며, 연구위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교육원을 대표한다.
- ③ 직원 및 조교는 교육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원장을 보좌한다.
- ④ 연구위원은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⑤ 원장 및 센터장, 직원의 관련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며,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·외부 교육 참여 등을 행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업무) ① 창의인재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비교과 교육과정 기본정책 및 계획 수립
2. 비교과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학생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
5. C-Money 관리 및 지급 업무
6. 특별강좌 운영 및 통계관리
7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인재교육원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의인재교육원장이 되고, 운영위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, 취·창업지원센터, 학생상담센터, CRC운영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교육원의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, 개정에 관한 사항
 - 2. 비교과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및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및 관련 학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비교과 교육과정

제5조(정의) ① 비교과 교육과정은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외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.

- ② 비교과프로그램에는 특강, 워크숍, 현장체험, 실험실습, 봉사활동, 멘토링, 튜터링, 소그룹 활동,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.

제6조(운영부서) ① 비교과 교육과정은 교육원에서 총괄하며, 비교과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다. 운영부서는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내 부서를 말한다.

- ② 운영부서 중 교육원의 교수학습개발센터, 취·창업지원센터, 학생상담센터, CRC운영센터는 센터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, 그 운영 결과 및 성과를 매학기 교육원에 보고한다.
- ③ 제2항의 센터를 제외한 부서 및 각 학과(부)에서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, 교육원에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하여 사전승인 받고, 프로그램 개설 및 홍보, 참가자 모집 및 수료자 확정,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의거하여 운영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교육원에 제출한다.

제7조(비교과성과관리위원회) ① 교육원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성과 평가와 질 관리를 위하여 비교과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“성과관리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

- ② 성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의인재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,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 성과 종합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비교과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
 - 4. 비교과 관련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성과보고 및 환류) ① 교육원은 매년도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운영 성과보고서를 교육 혁신원에 전달하고 총장에게 제출한다.

② 교육원은 성과 분석의 결과와 개선 사항을 차후 부서 운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운영부서에 전달한다.

제9조 (시행세칙) ①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특강 등의 강사료는 「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」(국제지식재산연수훈령 제 56호)과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(동 시행령 별표2)을 준용하되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